[]	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	미성년자의	법정대리인·	한정
	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			
[]	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			
Г 1	세무서(세무서장) 홛인서			

- 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**위임자 자필로** 작성하기 바라며,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면 됩니다.
- ※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.
- ※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,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

[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]							
위임자	성 명	\$		(서명 또는 날인)	주민등록번호		-
	국 적	1		주 소			
	신분증	<u> </u>		용 도		발급통수	
г∥⊐ІОІ	성 명	\$		주민등록번호			
대리인	주 소	:				관 계	
위임 사유							

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## [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]

성 명		주민	민등록번호		-		
주 소							
관 계		발급 통수		인감 ⑩ 또는 서명 ※서명 시 본인서 사실확인서 점박	네명 부		
	(성명:	) (	에 대한 인	감증명서 발급-	을 동의합니	다.	
					년	월	일
		위의 위인	I(동의) 사실	날을 확인합니다	ት.		
					년	월	일
	[] ス	대외공관(영시	<b>라</b> 관)			(서명 또	는 인)
	[] =	누감기관(교도	<u> </u> 관)	(직인),		(서명 또	는 인)
	·						

						(뒤쪽)	
세무서장	부동산 종류						
확인	부동산 소재지						
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. 년 월							
		세 무 서 장	직인			일	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##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- 1.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.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까지 입니다.
- 2.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,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.
- 3.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(예시: 부동산 매매용, 근저당 설정용, 자동차 매매용 등)을 적고,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,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.
  - ※ 용도란에 "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"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.
- 4. 미성년자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,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.
- 5. 주민등록 말소자(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)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,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, 대리인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등록증[(복지카드), 주민 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 • 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]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.
- 6.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,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,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.
- 7. 재외국민, 해외거주(체류)자, 수감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 하고,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- 가. 재외국민, 해외거주(체류)자: 재외공관(영사관)
  - 나. 수감자: 수감기관(교도관)
- 8.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(예: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)는「형법」제231조부터 제24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.